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군사관의 선발 및 교육,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정책, 단체설립 등〉

- 성일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90호)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78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13
1. 제정안들의 목적 및 체계	13
2. 제정안들에 대한 총괄 검토	18
1) 개요	18
2)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 및 관계 측면	21
3) 타 장교양성과정과 비교한 형평성 문제	22
4) 관계부처 의견	24
3. 주요 조문별 검토	26
1) 제명	27

2) 알오티시 발전위원회 및 실태조사 실시	27
3) 학생 군사교육 실시 등	30
4) 취업지원 관련	40
5) 창업·대학원 교육·대부지원 및 주택 우선공급	51
6) 알오티시 중앙회 설립	56
7) 알오티시 공제회 설립	63
8) 알오티시 발전기금 설치	67
9) 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 시행	71
※참고자료: 관련 법령 조항	84

I. 제안경위

1. 성일종의원안

가.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1. 29.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02.

2. 전현희의원안

가. 발 의 자 : 전현희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5. 7.

다. 회부연월일 : 2025. 5.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1) 성일종의원안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시”라 한다)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초급장교를 배출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알오티시의 응시자격, 군사교육과정, 병적편입 및 제적,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 등 알오티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알오티시 선발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알오티시 지원자가 급감하여 군의 초급간부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이들을 정예화된 군 초급간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알오티시 선발 및 교육,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시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위한 알오티시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시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2) 전현회의원안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씨”라 한다)은 1961년 창설된 이래 매년 3,000여명씩 누계 23만여 명의 국군장교를 배출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였고 전역후에는 사회각계에 문무(文武)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이 진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그동안 인구구조변화, 산업고도화, 사병복무기간 단축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 불구하고 알오티씨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거의 전무하여 알오티씨 지원자가 크게 격감하고 우수인재도

지원을 외면하는 등 알오티씨 제도가 양적, 질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음. 각계에서는 정예화된 군 간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이에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오티씨 선발 및 교육,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씨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알오티씨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씨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성일종의원안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씨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알오티씨 전역자의 취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알오티씨 교육생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알오티씨전역자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알오티씨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알오티씨육성 기본계획, 알오티씨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과 국가보훈부차관을 공동 위원장

으로 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시 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대학생에게 군사학술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교 소속으로 학군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 12조).

마. 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대학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알오티시 교육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알오티시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알오티시 교육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지급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대학교 4년 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동시에 학군단의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용하고, 소위로 임용된 사람은 3년의 범위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알오티시 교육생 및 알오티시 전역자에게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 이들이 인턴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시 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오티시 인턴사업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 자.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알오티시 인턴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채용에 소요되는 급여, 교재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 이상 복무한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 중에서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 카.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채용시험에 응시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점수에 만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가점(加點)하도록 함(안 제37조).
- 타.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일부를 취업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안 제38조).
- 파.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채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기업에 대하여 일반 알오티시전역자 고용 우수기업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하. 국가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알오티시 전역자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는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알오티시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50조).

거. 국가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및 제59조).

너. 알오티시 전역자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60조 및 제64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전역자들의 국가사회를 위한 희생·헌신 등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알오티시 추모공원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추진하도록 하고, 알오티시 추모공원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로 함(안 제68조).

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알오티씨 추모공원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항만·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78조).

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함(안 제83조).

2) 전현회의원안

가.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알오티씨 교육생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알오티씨 전역자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알오티씨 육성 기
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알오티씨 육성 기본계획, 알오티씨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과 국가보훈부차관을 공동 위원
장으로 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씨 발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8조 및 제9조).

다.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효율적으로 알오티씨 교육생 및
전역자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대학생에게 군사학술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

소속으로 학군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 12조).

마.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장기복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3학년부터 실시하는 일반 알오티씨 교육과정과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부터 실시하는 장기지원 알오티씨 교육과정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바.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시대적 여건에 맞는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알오티씨 교육생의 모집 및 선발 등에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 간부양성을 위하여 알오티씨 교내교육 내용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교육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아.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알오티씨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알오티씨 교육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지급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학군단의 일반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마치고 소위로 임용된 사람은 3년의 범위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장기지원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마치고 소위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의 규정에 따라 장기복무를 하도록 하며,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 야간대학원에 진학 시

학비 등을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5항).

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알오티씨 교육생 및 알오티씨 전역자에게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인턴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기회를 갖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씨 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오티씨 인턴사업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알오티씨 인턴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채용에 소요되는 급여, 교재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 이상 복무한 복무연장 알오티씨 전역자 중에서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파.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한 채용확대 및 우대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행할 경우 경영평가 반영과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7조).

하.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자발적인 채용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채용협약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물품구매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거. 국가보훈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씨 전역자들의 채용정보를 공유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알오티씨 취업 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42조제6항).

너. 국가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알오티씨 전역자는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는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알오티씨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7조 및 제49조).

더. 국가는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및 제58조).

러. 알오티씨 전역자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알오티씨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알오티씨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59조 및 제63조).

며. 알오티씨의 육성과 지원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오티씨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수입재원은 정부출연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전입금, 기부금 등으로 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67조에서 제71조까지).

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씨 전역자들의 국가사회를 위한 희생·헌신 등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알오티씨 추모공원 사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추진하도록 하고, 알오티씨 추모공원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로 함(안 제72조).

서. 알오티씨 추모공원 안장대상자에 알오티씨 전역자로서 사망한 사람 외에도 알오티씨 전역자의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알오티씨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72조제2항)

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씨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알오티씨 추모공원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항만·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82조).

저. 효율적으로 알오티씨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알오티씨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운용하도록 하며, 국회에 알오티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6조 및 제87조).

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9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들의 목적 및 체계

제정안들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운영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체계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최근 지원자 급감으로 인한 군의 초급간부 수급난 해결을 위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며, 1961년 창설 이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것을 고려해 예우를 확대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성일종의원안은 총 84개 조문의 본칙과 4개 조문의 부칙, 전현희의원안은 총 90개 조문의 본칙과 5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성일종의원안과 전현희의원안은 대부분의 조문 구성 및 순서가 동일하며 내용상 관련성이 있으므로 병합하여 검토함.

[제정안의 조문 구성]

성일종의원안 제1장 총칙	전현희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공정한 처우보장)	제5조(공정한 처우보장)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알오티시 정책추진체계	제2장 알오티씨 정책추진체계

제7조(알오티시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알오티시 발전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1조(실태조사)

제3장 알오티시 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학군단의 설치)
제13조(학군단의 폐지)
제14조(대학생활과 조화)
제15조(알오티시 교육생의 자격요건)
제16조(알오티시 교육생의 모집 및 선발 등)
제17조(군사교육의 주관)
제18조(교과과정 등)
제19조(군복 및 단복착용)
제20조(알오티시 교육생의 학비 등 지원)
제21조(알오티시 교육생의 병적편입 및 제적)
제22조(교육이수자의 임명)
제23조(의무복무 등)
제24조(사상자 보상)
제25조(부상자 치료)
제26조(알오티시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
제4장 알오티시 전역자의 취업 등

지원정책

제1절 알오티시 인턴사업의 활성화
제27조(알오티시 인턴사업추진)
제28조(알오티시 인턴희망자 등의 모집)
제29조(알오티시 인턴의 추천 및 선발)
제30조(알오티시 인턴 약정서 등의 체결)
제31조(알오티시 인턴보조금 지원)
제32조(알오티시 인턴의 관리)
제33조(알오티시 인턴의 특례)
제2절 공공부문 채용촉진
제34조(취업지원)

제7조(알오티시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알오티씨 발전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1조(실태조사)

제3장 알오티씨 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학군단의 설치)
제13조(학군단의 폐지)
제14조(대학생활과 조화)
제15조(알오티시 교육생의 자격요건)
제16조(알오티시 교육생의 모집 및 선발 등)
제17조(군사교육의 주관)
제18조(교과과정 등)
제19조(군복 및 단복착용)
제20조(알오티씨 교육생의 학비 등 지원)
제21조(알오티씨 교육생의 병적편입 및 제적)
제22조(교육이수자의 임명)
제23조(의무복무 등)
제24조(사상자 보상)
제25조(부상자 치료)
제26조(알오티씨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
제4장 알오티씨 전역자의 취업 등

지원정책

제1절 알오티씨 인턴사업의 활성화
제27조(알오티씨 인턴사업추진)
제28조(알오티씨 인턴희망자 등의 모집)
제29조(알오티씨 인턴의 추천 및 선발)
제30조(알오티씨 인턴 약정서 등의 체결)
제31조(알오티씨 인턴보조금 지원)
제32조(알오티씨 인턴의 관리)
제33조(알오티씨 인턴의 특례)
제2절 공공부문 채용촉진
제34조(취업지원)

제35조(5급 공무원 특별채용)
제36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7조(채용시험의 가점)
제38조(공공기관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39조(경력기간의 합산)

제3절 민간기업 채용촉진

제40조(채용협약 체결 등)
제41조(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제42조(경력기간의 합산권고)

제4절 그 밖의 지원

제43조(취업활동지원)
제44조(창업지원)
제45조(대학원 교육지원)
제46조(대부 지원)
제47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5장 알오티시 단체 설립

제1절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

제48조(법인격)
제49조(정관)
제50조(사업)
제51조(회원의 자격)
제52조(조직 등)
제53조(이사회)
제54조(임원)
제55조(총회)
제56조(총회의 소집)
제57조(의결정족수)
제58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9조(보조금)

제2절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

제60조(설립 등)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2조(회원의 자격)
제63조(조직 등)
제64조(사업)

제35조(5급 공무원 특별채용)
제36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7조(공공기관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38조(경력기간의 합산)

제3절 민간기업 채용촉진

제39조(자발적 채용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40조(채용협약기업의 지원)
제41조(경력기간의 합산권고)

제4절 그 밖의 지원

제42조(취업활동지원)
제43조(창업지원)
제44조(대학원 교육지원)
제45조(대부 지원)
제46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5장 알오티씨 단체 설립

제1절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

제47조(법인격)
제48조(정관)
제49조(사업)
제50조(회원의 자격)
제51조(조직 등)
제52조(이사회)
제53조(임원)
제54조(총회)
제55조(총회의 소집)
제56조(의결정족수)
제5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8조(보조금)

제2절 대한민국 알오티씨공제회

제59조(설립 등)
제6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1조(회원의 자격)
제62조(조직 등)
제63조(사업)

제65조(재원)

제66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제67조(행정조치 등)

제6장 보칙

제68조(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 시행자 등)

제69조(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 등)

제70조(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7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7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제7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74조(토지 출입 등)

제7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76조(추모공원사업의 준공인가)

제77조(추모공원조성의 특례)

제78조(추모공원사업의 지원)

제79조(알오티시 기념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제80조(알오티시 문화의 창달 등)

제81조(국제협력 촉진)

제82조(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사단법인 알오티시 공제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재원)

제65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제66조(행정조치 등)

제6장 알오티씨 발전기금

제67조(기금의 설치)

제68조(기금의 사용)

제69조(기금의 조성)

제70조(기부금품의 모집)

제71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장 보칙

제72조(알오티씨 추모공원사업 시행자 등)

제73조(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 등)

제74조(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7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76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제7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78조(토지 출입 등)

제7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80조(추모공원사업의 준공인가)

제81조(추모공원조성의 특례)

제82조(추모공원사업의 지원)

제83조(알오티씨 기념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제84조(알오티씨 문화의 창달 등)

제85조(국제협력 촉진)

제86조(전담조직의 설치)

제87조(연차보고서)

제88조(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사단법인 알오티씨공제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재단법인 알오티씨 장학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알오티씨 추모공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

2. 제정안들에 대한 총괄 검토

1) 개요

제정안들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 알오티시¹⁾ 지원을 저하에 따른 우수 인력 확보와 국가 기여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전역자의 취업 지원과 단체 설립 등 제대군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학생군사교육단은 대한민국 국군의 학군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의 장교 양성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1961년에 창설된 것임. 당시 정부는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장교 후보자 양성 필요성에 따라, 1961년 6월 1일 전국 16개 종합대학에 ‘학도군사훈련단’을 설치하였고, 이를 계기로 알오티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음.

이후 1963년 2월 20일, 알오티시 제1기생 2,642명이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참여 대학은 1970년대 초까지 33개, 1971년에는 41개 대학으로 확대되었음. 1972년경에는 ‘학도군사훈련단’이라는 명칭을 ‘학생군사교육단’으로 변경하고, 1971년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음.

1) ROTC를 성일종의원안은 알오티시. 전현회의원안은 알오티씨로 기재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알오티시로 기재함.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교육대학으로도 학군단이 확대 설치되었고, 2000년대에는 전국 100여개 이상의 대학으로 이를 확대함. 특히 2010년에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최초로 여성 학군단이 설치되었으며, 2013년부터 여성 후보생의 임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성별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점차 다양화하고 있음.

알오티시 제도는 4년제 대학 재학 중 2년간 군사학 교육을 이수하고 방학 중 입영훈련을 거친 후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2년 4개월 수준임.

2025년 기준 제63기 알오티시 후보생 2,758명이 소위로 임관한 바 있으며, 알오티시 출신 장교는 지금까지 약 19만 명 이상이 배출되어 군은 물론 정치·경제·언론·교육 등 각계각층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논의하는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 및 관계 측면, 타 장교양성과정과 비교한 형평성 측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제정법안의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목적 및 정의규정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조문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이하에서 소개하는 국가보훈부 등 6개 정부부처²⁾ 또한 부동의 내

2)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공정거래위원회

지는 신중검토 의견을 표명한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정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 및 관계 측면

본 법률의 제정안의 내용은 크게 1) 양성교육을 통해 장교로 임관하기까지의 학생군사교육 부분과 2) 전역 후의 지원이나 단체설립 등의 제대군인 지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분		세부내용	비고
성일종의원안	전현회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알오티씨 정책 추진체계	제2장 알오티씨 정책 추진체계		
제3장 알오티씨 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	제3장 알오티씨 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	ROTC 교육과정 전반	학생군사교육
제4장 알오티씨 전역자의 취업 등 지원정책	제4장 알오티씨 전역자의 취업 등 지원정책	ROTC 인턴사업, 공공부문/민간기업 채용촉진 등	제대군인 지원
제5장 알오티씨 단체 설립	제5장 알오티씨 단체 설립	ROTC 중앙회/공제회	
	제6장 알오티씨 발전기금	ROTC 기금 설치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ROTC 추모공원 사업 등	
제7장 벌칙	제8장 벌칙		

1) 학생군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병역법」³⁾을 근거로 한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으로 기 구체화되어 있으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음⁴⁾.

3) 「병역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4) [참고자료] 관련 법령 참조

따라서, 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반법을 근거로 하여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학군사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임.

3) 타 장교양성과정과 비교한 형평성 문제

가. 학생군사교육 과정의 형평성 문제

학군사관후보생에게만 학비, 기숙사 입주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안 제20조) 등은 타 장교양성과정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후보생, 학군부사관후보생들과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나. 제대군인 지원의 형평성 문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년 이상 복무한 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자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 미만의 기간을 복무한 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구분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취업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⁵⁾.

따라서, 5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한 학군사관 전역자는 「제대군인지

5) [참고자료] 관련 법령 참조

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나, 전체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아닌 5년 이상 복무한 학군사관 전역자에 대해서만 5급 공무원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임관 경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나아가 제정안들과 같이 알오티시 출신 전역자만을 대상으로 알오티시 중앙회 또는 알오티시 공제회, 알오티시 기금 및 알오티시 추모공원 등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 단체들과 비교해 볼 때 회원자격대상 및 시행사업의 중복, 타 임관 경로별 공법단체 설립 요구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출신 경로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관계부처 의견

가. 국방부는 제정안의 내용이 이미 「병역법」, 「군인사법」,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령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율되고 있어, 학군사관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학군사관 출신 전역자에 대한 별도 지원이 타 간부 운영제도와 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국가보훈부는 제정안에 대해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를 이미 3년마다 실시하고 있어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는 불필요하고, 타 병역의무자를 제외한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해서만 교육, 취업, 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알오티시중앙회’에 공법인 지위 부여는 회원 중복 및 기존 보훈단체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군인 전체를 포괄하는 군인공제회와의 역할 및 회원 중복을 고려할 때 ‘알오티시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부동의하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을 타법에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정안에 대해 부동의하는 입장임.

다. 행정안전부는 제정법에 따른 ‘알오티시 발전위원회’ 창설이 현재 운영 중인 군인복지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는 법 취지에 반하며, 국·공유재산 양여 및 특별사용 등을 규정한 ‘알오티시중앙회’ 설립규정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제정안에 대해 부동의하는 입장임.

라.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의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세제지원 방식 및 감면 세목을 특정하는 것은 경제여건, 재정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 방식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제정안에 대해 부동의하는 입장임.

마.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의 내용 중 알오티시 전역자에게만 주택 특별공급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군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알오티시 추모공원 내에 장사시설 이외의 기념관·박물관·전시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은 「공원녹지법」 위반이므로 제정안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바. 인사혁신처는 제정안에서 규정한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한 취업 시가산점 제도에 대해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8헌마363, 1999. 12.23.)취지, 다른 제대군인 및 일반 수험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오티시 전역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과 채용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1) 제명

성일종의원안은 안 제명을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현희의원안은 안 제명을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함.

제정안 제명에 포함된 ‘알오티시’, ‘알오티씨’란 학생군사교육단의 영문표기 약어(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로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용어이지만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님.

국방부는 영문 ‘ROTC’ 표현은 학생군사교육단 또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후보생을 집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입법 취지(전역 후의 취업지원, 단체설립 등을 포함)를 고려할 때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법률명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학생군사교육단의 약칭이 대중에게 많이 쓰인다는 이유로 법 제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전역 후의 취업지원, 단체설립 등을 포함)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 특별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학군 장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명으로 적절해 보임.

제 정 안
학군 장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알오티시 발전위원회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8조~제11조)

제정안들은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시 발전위원회를 두고,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알오티시 전역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안	전현회의원안
제8조(알오티시 발전위원회) 기본계획,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시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과 국가보훈부차관이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 회장, 그리고 알오티시·국방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알오티씨 발전위원회) 기본계획,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씨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과 국가보훈부차관이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7조에 따른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 회장, 그리고 알오티씨·국방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일종의원안	전현희의원안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알오티씨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알오티씨 교육생 및 알오티씨 전역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알오티씨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알오티씨 교육생 및 알오티씨 전역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47조에 따른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들은 알오티씨 육성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알오티씨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는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타 전역자(사관학교, 부사관, 병사 등)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여 특정 출신 전역자만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적절성 및 기준

알오티씨 지원 및 실태조사 관련 정부조직 및 위원회가 존재⁶⁾하

6) ①(ROTC 교육)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②(ROTC 전역자 취업 지원 등)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지원과)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는 점, 현역 군인 및 제대군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기 시행되고 있다는 점⁷⁾을 감안할 때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국방부는 후보생 양성과정과 전역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성격 및 정부부처 소관이 다르므로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 출신만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알오티시 발전위원회 구성이 현재 운영 중인 ‘군인복지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므로, 추가적인 위원회 설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⁸⁾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부동의하는 입장임.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기에, 특정 출신 전역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7)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 군사교육 실시 등(안 제12조~제26조)

제정안은 학군단의 설치, 교육생의 자격요건, 모집, 선발, 학비지원 및 교과과정 등에 대해 규율하고자 함.

성일종의원안	전현회의원안
제12조(학군단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대학생에게 군사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문무겸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소속으로 학군단을 둘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지정한다. 1.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령 정하는 적정한 수의 알오티씨 교육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3.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등이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4. 그 밖에 대학의 입지 및 지역여건 등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생의 교육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군단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대학생에게 군사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문무겸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소속으로 학군단을 둘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지정한다. 1.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령 정하는 적정한 수의 알오티씨 교육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3.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등이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4. 그 밖에 대학의 입지 및 지역여건 등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알오티씨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알오티씨 교육과정 : 대학 3학년부터 실시하는 알오티씨 교육과정 2. 장기지원 알오티씨 교육과정 : 군

제13조(학군단의 폐지) 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이 설치된 대학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제14조(대학생활과 조화) ① 교육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시 교육과정이 대학생활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알오티시 교육생의 언행, 태도, 복장 및 두발 등은 대학문화를 현저하게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절도있게 구분되어야 한다. 제15조(알오티시 교육생의 자격요건) 학군단에 입단하여 알오티시 교육생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학 재학생일 것 3.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4.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없을 것 5.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없을 것 제16조(알오티시 교육생의 모집 및 선발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의 알오티시 교육생 모집계획	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 인력양성이나 장기인력활용을 위해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부터 실시하는 알오티씨 교육과정 제13조(학군단의 폐지) 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이 설치된 대학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제14조(대학생활과 조화) ① 교육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씨 교육과정이 대학생활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알오티씨 교육생의 언행, 태도, 복장 및 두발 등은 대학문화를 현저하게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절도있게 구분되어야 한다. 제15조(알오티씨 교육생의 자격요건) 학군단에 입단하여 알오티씨 교육생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학 재학생일 것 3.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4.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없을 것 5.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없을 것 제16조(알오티씨 교육생의 모집 및 선발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의 알오티씨 교육생 모집계획
--	--

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알오티씨 교육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대학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모집공고 등에 따라 알오티씨 교육생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서를 대학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각군 참모총장은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알오티씨 교육생을 선발한다.

제17조(군사교육의 주관) ① 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12조에 따른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알오티씨 교육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의 자격 및 선발 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알오티씨 교육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대학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모집공고 등에 따라 알오티씨 교육생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서를 대학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각군 참모총장은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알오티씨 교육생을 선발한다.
- ⑥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알오티씨 교육생의 모집 및 선발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군사교육의 주관) ① 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12조에 따른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알오티씨 교육과정은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의 자격 및 선발 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교과과정 등) ① 알오티씨 교육과정의 교육은 교내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교내교육은 학교에서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및 자질과 문무겸비의 지도적 역량을 쌓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알오티씨 교육생 교과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④ 교과과정의 내용·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군복 및 단복착용) ①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과 알오티씨 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사교육 시간 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알오티씨 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사교육 기간 중 교육장소 등 특정장소에서 알오티씨 교육생 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착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0조(알오티씨 교육생의 학비 등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알오티씨 교육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 학비(이하 “학비”라 한다)
2. 대학기숙사 입주비

제18조(교과과정 등) ① 알오티씨 교육과정의 교육은 교내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교내교육은 학교에서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및 자질과 문무겸비의 지도적 역량을 쌓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기,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 적응성을 터득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알오티씨 교육생 교과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④ 교과과정의 내용·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군복 및 단복착용) ①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과 알오티씨 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사교육 시간 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알오티씨 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사교육 기간 중 교육장소 등 특정장소에서 알오티씨 교육생 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착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0조(알오티씨 교육생의 학비 등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알오티씨 교육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 학비(이하 “학비”라 한다)
2. 대학기숙사 입주비

3. 단복 등 피복비 4. 교내교육 및 입영교육 수당 5. 품위유지 수당 ②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협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알오티시 교육생의 학비 감면 2. 알오티시 교육생의 기숙사 입주비 감면 및 우선 배정 3. 알오티시 교육시간과 대학수업 시간의 조화 제21조(알오티시 교육생의 병적편입 및 제적) ① 제16조에 따라 알오티시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알오티시 교육생 병적에 편입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알오티시 교육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 된 때 ③ 제2항에 따라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교육이수자의 임명) ① 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3. 단복 등 피복비 4. 교내교육 및 입영교육 수당 5. 품위유지 수당 ②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협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알오티씨 교육생의 학비 감면 2. 알오티씨 교육생의 기숙사 입주비 감면 및 우선 배정 3. 알오티씨 교육시간과 대학수업 시간의 조화 제21조(알오티씨 교육생의 병적편입 및 제적) ① 제16조에 따라 알오티씨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알오티씨 교육생 병적에 편입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알오티씨 교육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 된 때 ③ 제2항에 따라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교육이수자의 임명) ① 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	--

동시에 학군단의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와 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무복무 등) ① 제22조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환 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알오티씨 교육생 또는 알오티씨 의무복무자는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연장을 하거나 중·장기복무를 할 수 있다.	동시에 학군단의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와 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무복무 등) ① 제22조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마치고 임용된 사람 :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복무 2. 장기지원 알오티씨교육과정을 마치고 임용된 사람 :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복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다만, 5년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상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환 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알오티씨 교육생 또는 알오티씨 의무복무자는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연장을 하거나 중·장기복무를 할 수 있다.
--	--

제24조(사상자 보상) 알오티씨 교육생이 해당 군사교육(교내 군사교육을 포함한다)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 제5항에 따른 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제25조(부상자 치료) ① 알오티씨 교육생으로서 해당 군사교육 중(교내 군사교육을 포함한다)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대학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대학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신청서를 받은 대학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미비, 전

⑤ 정부는 알오티씨 단기복무자, 복무연장자 또는 장기 복무자가 현역 복무기간동안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야간수업 대학원에 국한한다)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사상자 보상) 알오티씨 교육생이 해당 군사교육(교내 군사교육을 포함한다)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 제5항에 따른 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제25조(부상자 치료) ① 알오티씨 교육생으로서 해당 군사교육 중(교내 군사교육을 포함한다)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대학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대학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신청서를 받은 대학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미비, 전

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6조(알오티시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 ① 국가는 알오티시 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6조(알오티씨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 ① 국가는 알오티씨 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 제정안의 학생 군사교육 실시 내용 중 대부분 규정은 기 대통령령 및 국방부령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제정안	기존 법령 반영현황
제12조(학군단의 설치)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2조(군사교육과정)
제13조(학군단의 폐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2조(군사교육과정)
제17조(군사교육의 주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제18조(교과과정 등)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4조(교과과정등)
제19조(군복 및 단복착용)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제24조(보상)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보상)
제25조(부상자 치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제26조(알오티시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 등)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및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국방부령)⁹⁾은 「병역법」¹⁰⁾의 수권을 위임받아 제정

9) [참고자료] 관련 법령 참조

10) 「병역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

된 규정으로, 법규성이 인정되어 대외적 효력이 있기에 이를 별도로 법률로써 제정할 입법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편, 전현희의원안 제12조제3항제2호11)는 기존에 없던 제도인 ‘장기복무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 인력양성 및 장기 인력활용을 위한 과정임.

그러나 학생군사교육단 선발은 군인을 직업으로 삼기 위한 양성과정인 사관학교¹²⁾와 달리 알오티시는 「병역법」¹³⁾에 의한 의무복무제도의 일환인 점, 과학기술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가 개교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기존의 법령으로도 알오티시 모집, 교육 등 학생군사교육을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대학 학비·기숙사 입주비 감면

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 11) 전현희의원안 제12조(학군단의 설치) ③ 알오티씨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알오티씨 교육과정 : 대학 3학년부터 실시하는 알오티씨 교육과정
2. 장기지원 알오티씨 교육과정 :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 인력양성이나 장기 인력활용을 위해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부터 실시하는 알오티씨 교육과정

- 12)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13)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등은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국방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가보훈부는 제정안 제24조¹⁴⁾에서 알오티시 교육생 중 군사교육을 받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으로 유족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¹⁵⁾의 법률 우선 적용 원칙과 상충되어 법체계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4) 성일종의원안 및 전현희의원안 제24조(사상자 보상) 알오티시 교육생이 해당 군사교육(교내 군사교육을 포함한다)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취업지원 관련(성일종의원안 제34조~제43조, 전현희의원안 제34조~제41조)

제정안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알오티시 전역자의 공공부문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 취업 시 알오티시 군 복무 경력을 경력 기간에 합산하도록 권고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채용 협약 체결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안	전현희의원안
제34조(취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일반 알오티시전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5급 공무원 특별채용)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는 5년 이상 복무한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 중에서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규모,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특별채용 시험시기 및 시험과목, 응시절차, 합격자 선발 등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이	제34조(취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5급 공무원 특별채용)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는 5년 이상 복무한 복무연장 알오티씨 전역자 중에서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규모,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특별채용 시험시기 및 시험과목, 응시절차, 합격자 선발 등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이

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일반 알오티시 전역자의 점수에 만점의 3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공기관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 ①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일부를 취업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제37조(공공기관의 채용확대 및 우대 권장)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한 채용확대 및 우대를 권장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한 채용확대 및 우대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 반영과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채용확대 및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③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공기관 및 제3항의 사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경력기간의 합산) 공공기관 및 사립학교는 우선 고용한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하여야 한다. 제40조(채용협약 체결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업과 채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경력기간의 합산) 공공기관 및 사립학교는 우선 고용한 일반 알오티시 전역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하여야 한다. 제39조(자발적 채용협약의 체결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시 전역자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자발적으로 일반 알오티시 채용협약(이하 “채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용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채용직종 및 채용예정인원 3. 근무환경, 채용조건 및 기준 4. 그밖에 채용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금융·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채용협약체결 당사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채용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이하 “채용협약기업”이라 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채용협약을 이행하는 경우 2. 채용협약기업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채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용환경이 변경되어 계속하여 채용을 추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5. 그 밖에 채용협약 해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효율적인 채용협약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용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업무를 제47조에 따른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채용협약을 보완·변경·해약할 수 있다.
--	---

제41조(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0조에 따라 채용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일반 알오티시전역자 고용 우수기업의 인증(이하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은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취

⑦ 채용협약기업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협약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용협약의 체결·변경·해약·이행상황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채용협약기업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알오티시 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용협약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채용협약기업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금융·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채용협약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工事)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채용협약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용협약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알오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의 기준·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경력기간의 합산권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기업들에게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군복무 경력을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3조(취업활동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에게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알오티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알오티시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분야 구인·구직 정보,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취업지원 또는 근무경험 프로그램 3.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채용촉진 홍보활동 4.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의 연계 5. 그 밖에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1조(경력기간의 합산권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기업들에게 일반 알오티시 전역자의 군복무 경력을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 제정안에 따르면 알오티시 전역자는 공공부문에서 5급 공무원 특별채용, 채용시험 가점, 우선고용 의무 등의 혜택을 받고, 민간부문에서는 취업활동 지원, 경력 기간 합산 권고, 알오티시 전역자 채용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게 됨.

□ 알오티시 전역자의 5급 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현행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공무원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공상 공무원 등에 한정되며¹⁶⁾, 이들 역시 방호·운전·간호조무·위생·우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정·속기·환경 등 일반직공무원 내 일부 직렬¹⁷⁾에 한해 7급 이하로만 특별채용이 가능함.

또한, ROTC 복무 중 전몰·전상·순직·공상하거나 무공·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특별채용 대상이기에, ROTC 전역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체계는 일정 부분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국가에 대한 기여도 및 헌신의 수준 및 「대한민국헌법」

-
-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의2

상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대상¹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알오티시 전역자라는 이유만으로 5급 공무원 특별채용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신사무관 제도의 재림으로 비칠 수 있어 보임.

□ 알오티시 전역자의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시 가산점 부여와 관련하여,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8헌마 363, 1999. 12.23.)¹⁹⁾을 고려할 때, 채용시험 가점 및 민간부문 경력 기간 합산 권고 등의 제정안 조항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또한, 제정안에 포함된 민간부문 지원 조항인 경력기간 합산 권고, 알오티시 전역자 채용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알오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은, 알오티시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 병역이행 집단과 비교하여 과도한 혜택으로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기술할 여러 관계 부처들의 반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임.

18)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19)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 국방부,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일반 수험생 및 다른 제대군인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정안의 해당 조항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알오티시 전역자 채용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경제여건 및 재정상황에 맞는 지원방식을 제약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해당 조항들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알오티시 전역자 집단에 한정된 채용은 공무담임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알오티시 취업지원센터’설치를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정부조직 법령 체계상 부적절²⁰⁾하며, 이미 해당 기능을 국가보훈부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해당 조항들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오티시 전역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과 채용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해당 조항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0)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5) 창업·대학원 교육·대부지원 및 주택 우선공급(성일종의원안
제44조~제47조, 전현희의원안 제43조~제46조)

제정안들은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해 창업, 대학원 교육, 대부지원
및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안	전현희의원안
제44조(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알오티시전역자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 관련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창업과 관련된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창업 관련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창업 관련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7. 그 밖에 창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대학원 교육지원) 국가는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대부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	제43조(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 관련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창업과 관련된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창업 관련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창업 관련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7. 그 밖에 창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대학원 교육지원) 국가는 복무연장 알오티씨 전역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대부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

은 일반 알오티시전역자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 구입 대부 2. 주택 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3. 사업 대부 4. 생활안정 대부 5. 학자금 대부 ④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	은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제대군인지원자금과 제67조에 따른 알오티씨 발전기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 구입 대부 2. 주택 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3. 사업 대부 4. 생활안정 대부 5. 학자금 대부 ④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
--	---

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무연장 알오티시 전역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에게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무연장 알오티씨 전역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복무연장 알오티씨 전역자에게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	---

□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²¹⁾에게 창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학자금 보조, 장기저리대부 및 주택우선공급을 실시하고 있음²²⁾.

21) 중기복무: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장기복무: 10년 이상 복무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

□ 다만, 제정안은 알오티시 전역자에게만 해당 혜택(모든 알오티시 전역자: 창업지원 및 대부지원, 복무연장 알오티시전역자(6년 미만 복무): 대학원 교육지원, 주택 우선공급)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다른 제대군인(사관학교, 학사장교, 간부사관, 부사관 등)과 형평성 측면에서 알오티시 전역자에게만 추가로 지원해야 할 명확한

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1조(대부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 구입 대부
2. 주택 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3. 사업 대부
4. 생활안정 대부
5. 학자금 대부

④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알오티시 전역자와 다른 제대군인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내지는 부동의하는 입장임²³⁾.

23) 해당 부처들은 창업지원, 대학원 교육지원, 대부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에 있어 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으로, 알오티시 전역자를 위한 기존 제대군인에 비해 요건이 완화된 지원책은 기존 제대군인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임.

6) 알오티시 중앙회 설립(성일중의원안 제48조~제59조, 전현회의원안 제47조~제58조)

제정안들은 알오티시 전역자의 친목과 권익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를 설립하고 그 조직과 정관, 총회 등의 운영사항을 규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수익·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중의원안	전현회의원안
제48조(법인격) ① 알오티시 전역자는 국가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중앙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정관)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제47조(법인격) ① 알오티씨 전역자는 국가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의 친목과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중앙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정관)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사업)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알오티씨 교육생 및 회원의 협력 및 지원 등 알오티씨 발전을 위한 사업 3. 알오티씨의 명예선양, 추모공원사업, 기념사업 등 문무겸비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5.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6. 알오티씨 교육생 및 회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사업 7.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1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알오티씨 전역자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알오티씨 현역장교 및 중앙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오티씨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대한 권리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사업)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알오티씨 교육생 및 회원의 협력 및 지원 등 알오티씨 발전을 위한 사업 3. 알오티씨의 명예선양, 추모공원사업, 기념사업 등 문무겸비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5.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6. 알오티씨 교육생 및 회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사업 7.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0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알오티씨 전역자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알오티씨 현역장교 및 중앙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오티씨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대한 권리
--	--

및 의무를 가진다.

제52조(조직 등)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지구 및 지회를 둔다.

② 중앙회, 지구 및 지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4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및 의무를 가진다.

제51조(조직 등)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중앙회, 지부 및 지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3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중앙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55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지회장 및 분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5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7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중앙회에 무상으로 양여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중앙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54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지회장 및 분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5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6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중앙회에 무상으로 양여

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제5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중앙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제58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

□ 제정안은 알오티시 전역자만을 위한 법인으로 「대한민국 알오티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공법단체로 설립하고, 중앙회의 운영 규정 및 운영회에 제공되는 혜택을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 「대한민국 ROTC 중앙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개별 법률에 근거한 공법인은 아님. 한편, 재향군인 관련 공법인으로 이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존재하며, 그 외에도 임관 출신별로 공법적 인가를 받지 않은 14개의 임의단체도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알오티시 전역자만을 위한 별도의 공법인을 설립할 경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의 기능 및 대상회원 중복, 다른 임관 출신별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나아가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회에 국·공유재산을 무상 양여·대부·수익·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제정은, 국·공유재산이 국민 모두의 재산으로 공평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사용 등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무상 양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부담을 초래하고 특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²⁴⁾에만 인정되고 있는 점, 보조금 교부 또한 재정 상황 및 교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²⁵⁾하고 있으나, 제정안들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시외버스 운송업, 크루즈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이 알오티시중

24) 하위 국가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양여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양여하는 경우,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사용의 경우 등

2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6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회에 대해 주무부처의 승인 없이도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보조금 교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 단체의 수익사업 영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 간 형평성 및 국가 재정 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기 어려워 보임.

□ 국방부,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의 기능 및 회원 중복 및 타 출신별 임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 및 사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하는 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등 다른 군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두지 않는 점, 타 기관·법인·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제정안에 국·공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두는 것에 대해 부동의하는 입장임.

7) 알오티시 공제회 설립(성일종의원안 제60조~제67조, 전현희 의원안 제59조~제66조)

제정안들은 알오티시 전역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를 설립하고 그 조직과 운영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안	전현희의원안
제60조(설립 등) ① 알오티시 전역자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2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알오티시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알오티시 전역자 2. 알오티시 현역복무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63조(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	제59조(설립 등) ① 알오티씨 전역자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알오티씨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대한민국 알오티씨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1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알오티씨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알오티씨 전역자 2. 알오티씨 현역복무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62조(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

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6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5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	--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행정조치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행정조치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제정안들은 알오티시 전역자만을 위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복지·공제급여 등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대한민국 알오티시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를 설립하고 공제회의 운영 규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기존에는 현역인 하사 이상의 군인과 군무원만을 대상으로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부여했으나, 「군인공제회법」 개정²⁶⁾에 따라 하사 이상의 군인과 군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도 군인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확대하였음²⁶⁾.

따라서, 알오티시 전역자는 전원이 군인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는바 기능, 성격 및 회원이 중복되는 알오티시공제회를 별도로 설립할 입법 실익이 크지 않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알오티시공제회의 기능, 성격 및 회원이 군인공제회와 중복되고, 기존 운영 중인 7개의 공제회²⁷⁾는 해당 직업군 전체를 대표하는 공제회인 점을 고려할 때, 알오티시공제회는 군인 중 일부만을 대표하는 성격이므로 별도 설립 필요성에 대해 부동의하는 입장임.

26) 「군인공제회법」(법률 제19949호, 2024.1.9. 개정)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

27)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정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8) 알오티시 발전기금 관련(전현회의원안 제67조~제71조)

제정안은 알오티시의 육성과 지원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오티시 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전현회의원안
제67조(기금의 설치) 알오티씨의 육성과 지원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알오티씨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8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2. 알오티씨 교육생의 학비 등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3. 알오티씨 인턴사업 지원 4. 알오티씨 전역자의 취업 및 창업, 대부 등 전역 후 생활안정 지원 5. 중앙회 및 공제회 지원 6. 알오티씨 추모공원사업 지원 7. 알오티씨 문화창달 및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알오티씨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또는 차관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예산액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입금중 100분의 10을 기금에 전입한다. ③ 정부는 국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제70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의 모집을 중앙회로 하여금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 모집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용·관리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알오티시 육성과 지원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알오티시 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알오티시 발전기금은 알오티시 교육생, 인턴사업, 전역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안 제70조에서 알오티시중앙회가 기부금의 모집을 허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²⁸⁾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규정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음.

□ 둘째,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운용하는 자금²⁹⁾이나, 제정안에서 규정한 기금의 사용처는 후보생 교육, 전역 이후의 지원, 중앙회 및 공제회, 추모공원사업 지원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셋째, 군인의 복지와 관련된 기금으로는 이미 「군인복지기금법」

28)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29)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에 따른 군인복지기금³⁰⁾,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³¹⁾이 존재하므로, 제정안에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 제도와 기능적으로 중복되며, 타 경로 출신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넷째, 제정안은 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³²⁾에 의하면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동법 별표에 명시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 체계상 모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알오티시 기금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다른 출신 경로별 군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제대군인의 지원을 위해 1998년부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기 시행 중으로, 알오티시 전역자를 위한 특별지원은 기존 제대군인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부동의하

30)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1) 「보훈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하되 중앙회에 모집을 위탁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³³⁾에 반하므로 부동의하는 입장임.

3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9) 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 관련(성일종의원안 제68조~제79조,
전현희의원안 제72조~제83조)

제정안들은 알오티시 전역자의 국가사회를 위한 희생·헌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알오티시 추모공원 설립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시행방
안을 법률로써 규율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안	전현희의원안
제68조(알오티시 추모공원사업 시행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전역자들의 호국안보 등 국가사회를 위한 희생·헌신 및 봉사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알오티시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모공원 안장대상자는 알오티시 전역자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알오티시 전역자가 추모공원 사업시행자와 미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유족이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추모공원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중앙회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추모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본방안을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추모공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제72조(알오티씨 추모공원사업 시행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씨 전역자들의 호국안보 등 국가사회를 위한 희생·헌신 및 봉사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알오티씨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모공원 안장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알오티씨 전역자가 추모공원 사업시행자와 미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유족이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알오티씨 전역자로 사망한 사람 2. 제1호의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알오티씨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③ 추모공원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중앙회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추모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본방안을 미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추모공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제69조(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추모공원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모공원 사업계획(이하 “추모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추모공원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추모공원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추모공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추모공원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모공원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추모공원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모공원 사업계획(이하 “추모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추모공원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추모공원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추모공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추모공원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모공원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추모공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추모공원 승인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추모공원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승인된 추모공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추모공원사업 승인절차, 추모공원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추모공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추모공원 승인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추모공원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승인된 추모공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추모공원사업 승인절차, 추모공원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 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추모공원 승인권자가 제69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0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7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추모공원 승인권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을 승인(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4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

계획의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계획의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4.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협의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추모공원사업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모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4.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협의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추모공원사업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모
---	---

공원사업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제69조 제1항에 따른 추모공원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제70조제1항에 따른 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공원사업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6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제73조제1항에 따른 추모공원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제74조제1항에 따른 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모공원사업계획 승인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추모공원의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4조(토지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추모공원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7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추모공원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추모공원 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추모공원의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8조(토지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추모공원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7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추모공원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추모공원 승인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제76조(추모공원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추모공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모공원 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추모공원사업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모공원사업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제80조(추모공원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추모공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모공원 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추모공원사업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모공원사업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

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추모공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모공원 승인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추모공원조성의 특례) ① 중앙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추모공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추모공원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항만·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9조(알오티시 기념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에 알오티시와 관련한 시설물이나 기념관·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추모공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모공원 승인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추모공원 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추모공원조성의 특례) ① 중앙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추모공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모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추모공원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항만·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3조(알오티씨 기념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에 알오티씨와 관련한 시설물이나 기념관·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	--

② 알오티시와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 · 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알오티씨와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 · 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정안들은 알오티시 전역자 등을 안장하기 위한 추모공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에 있어 법률·예산적 특례를 부여하며, 추모공원 내에 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 기념관·박물관·전시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다만, 알오티시 복무자의 국가사회를 위한 공헌과 희생의 가치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묘지 설치가 규정되어 있고³⁴⁾, 추모공원 설립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용에 관해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이를 다시 우선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본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오티시 추모공원 사업 관

34)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9. 4. 2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런 절차 등은 기존 법령과 중복되어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알오티시 전역자만을 위한 추모공원 설립 및 특별 규정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의 추모공원 조성 특별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포괄적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현재 운용 중인 계획적·체계적 토지이용관리체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린벨트에 관한 최우선 적용 특별법임을 고려할 때,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특정 개별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³⁵⁾에 따르면 묘지공원에는 장사시설 및 묘지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시설만 설

3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①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나목, 제10호 전단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별표 1 제9호나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별표 3의2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9.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의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치할 수 있고 그 밖의 시설의 설치를 금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추모공원은 사실상 묘지공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념관·박물관·전시관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위법 소지가 있기에 법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참고자료: 관련 법령 조항

○ 「병역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교육과정) ①군사교육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둘 수 있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둘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정한다.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적정한 수의 학군무관후보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할 것
3.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등이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
4. 그 밖에 학교의 입지 및 지역여건 등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항해·기관·어업 또는 어로에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가. 4년제 과정: 제2학년

나. 5년제 과정: 제3학년

2.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은 당해 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년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 2년제 과정: 제1학년

나. 3년제 과정: 제2학년

다. 4년제 과정: 제3학년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① 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국방부장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교관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은 국방부장이 교육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군사교육의 주관) ① 군사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과 협의하여 주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국방부장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예비역교관의 자격과 선발방법 등은 국방부장이 교육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6조(병적에서의 제적)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 된 때.

② 삭제

제7조(입영교육) 국방부장은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졸업자는 현역의 장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는 현역의 부사관

제9조 삭제<1989.3.27.>

제10조(군복 및 단복착용) ①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1조 삭제<2015.7.20.>

제11조의2(보상)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제11조의3(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①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1989.3.27.>

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① 학생군사교육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군사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지원·선발 및 교과내용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 주간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개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삭제

제9조 삭제 <2009. 1. 30.>

제10조 삭제 <2009. 1. 30.>

제11조 삭제 <2009. 1. 30.>

제12조 삭제 <2009. 1. 30.>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업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 및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삭제 <2021. 6. 8.>

제14조의3 삭제 <2021. 6. 8.>

제14조의4 삭제 <2021. 6. 8.>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3. 7. 16.>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직지원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4장 교육·의료·대부 지원 등 <개정 2008. 3. 28.>

제19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과 그 가구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또는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반려하거나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 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痕)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痕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는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부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 구입 대부

2. 주택 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3. 사업 대부

4. 생활안정 대부

5. 학자금 대부

④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거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지원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삭제 <2016. 1. 6.>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4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진로·직업상담 등의 지원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4.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5.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
6.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등, 가족관계등록정보·소득금액증명·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③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9. 1. 30.>

⑤ 삭제 <2009. 1. 30.>

⑥ 삭제 <2009. 1. 30.>

○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국방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지원·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73. 9. 3.>

제3조(교육과정의 설치)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2.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40명 이상,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은 3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과과정등) 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교내 교육은 학교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적응성을 터득함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지휘관리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이 제3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교내 교육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제6조(모집 계획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 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별 모집인원
2.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3. 선발예정일
4. 기타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선발) ①학군 군간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서류심사·필기시험·체력검정·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그 결과를 군병원에 제출한다.

③면접시험은 장교 또는 부사관요원으로서의 용모·태도·품격등 적격성을 평가한다.

④ 삭제 <2015. 8. 4.>

⑤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해야 한다.

제9조(선발 상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그 선발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선서)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성명)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군사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조문체제도버튼연혁

제11조(교육평가) 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교내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교내 교육평가”라 한다)와 입영 교육에 관한 평가(이하 “입영 교육평가”라 한다) 및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요원은 교내 교육평가를,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교육평가를, 각군 참모총장은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교내 교육 평가는 학기말평가와 학년말평가로 구분하되, 학기말평가는 매학년 제1학기말에, 학년말평가는 매학년말에 실시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는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최종학년에 실시한다.

④ 교내 교육평가·입영 교육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고, 임용을 위한 임관종합평가의 과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사열)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학군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 사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병적관리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선발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의 신상기록표 및 훈련기록표를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병적 전환) ①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공군 학군 군간부 후보생은 대응하는 군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해야 한다. 다만,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은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 체력인증 및 인성검사 등 선발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해병대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시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을 전환할 수 없다.

⑤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서로 협의하여 해병대 임관 전 사전교육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⑥ 해병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시점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시작한 날로 한다.

제14조(제적의 통보 등) 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